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44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
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 다만,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.

다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.

- 1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2)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
- 3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라.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늘려 부과할 수 있다. 다만,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.

2. 개별기준

| 위반행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근거<br>법조문        | 과태료   |       |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1차 위반 | 2차 위반 | 3차 이상<br>위반 |
| 1. 법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<br>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| 법 제42조<br>제1항제1호 | 100만원 | 200만원 | 300만원       |
| 2.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<br>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| 법 제42조<br>제1항제2호 |       |       |             |
| 3.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질문에 대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42조           |       |       |             |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|  |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|--|--|
| 하여 답변을 거부·방해 또는 기피<br>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또는<br>같은 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·방해<br>또는 기피한 경우 | 제1항제3호 |  |  |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|--|--|